

## 남북한 통일 시 조약 승계 문제 처리 試論

### The International Legal Issues of Treaty Succession in case of Korean Unification

이 성 덕\*  
Yi, Seong-Deog

〈 목 차 〉

- I. 문제의 제기
- II. 국제법상 조약의 승계 문제 해결 방식 일반
  - 1. 승계의 원칙: 백지의 원칙과 계속의 원칙
  - 2. 개별적 해결방법
- III. 조약 분야의 국가승계를 처리한 국가실행의 예
  - 1. 영역의 일부 승계 시 실행
  - 2. 신생독립국가: 식민지 독립의 예
  - 3. 국가 통합의 예
  - 4. 국가 분리의 예
- IV. 1978년 조약의 승계에 관한 협약 상의 내용
  - 1. 협약 상 국가승계의 의미 및 국가승계 유형
  - 2. 국가승계 유형별 조약 승계의 내용
- V. 남북한 통일 유형에 따른 조약의 승계 문제
  - 1. 국가통합의 결과 신국이 성립하는 경우
  - 2. 대한민국으로 국가통합이 되는 경우
- VI. 이상적인 통일 방식과 그에 따른 조약 승계 해결
  - 1. 조약의 승계 방식과 범위
  - 2. 국경조약의 특례
- VII. 결론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투고일: 11월 22일 심사일: 12월 6일 게재일: 12월 14일)

## I. 문제의 제기

대한민국(이하 ‘남한’과 혼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과 혼용)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제법적 문제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국제법적 문제 중에는 양 주체가 통일 합의를 하는 경우에 양자 간 합의로 전부 혹은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이 있을 수 있다. 전자는 통일된 국가가 일방적 혹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요구하여 우리의 법적 지위를 구현할 수 있는 사안일 것이고, 후자는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제사회의 구성국들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하는 법적 지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주로 국가승계(State Succession)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제법적 문제들일 수 있다. 그에는 조약의 승계, 국가 재산이나 부채의 승계, 국제기구 회원 지위의 승계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국제법상 명확하게 법원칙이 확립된 것도 아니고, 국가의 실행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승계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여 일반적으로 이와 관련한 확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곤란하다.

대체적으로 국가승계는 식민지 독립, 기존 국가 일부의 분리 독립, 국가 해체, 국가 통합, 영토의 일부 이전, 원 국가로의 복귀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sup>1)</sup> 이러한 유형에 따라 조약의 승계 등과 같은 법적인 문제가 달리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남북이 통일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우리나라 및 북한이 체결한 조약을 통일 한국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범위까지 승계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어떠한 경우에는 소위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입각하여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논리적인 부정합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대한 평가의 양면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사회에서의

1) 정인섭, *조약법강의*, 박영사, 2016, p. 333.

남·북한의 현 상황, 즉 각자의 수교현황이나 UN 가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제법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설정된 상태에서 사실상 논의될 개연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 II. 국제법상 조약의 승계 문제 해결 방식 일반

### 1. 승계의 원칙: 백지의 원칙과 계속의 원칙

국가승계 시 조약의 승계와 관련하여 대립되는 두 원칙은 백지의 원칙(principle of clean slate)과 계속의 원칙(principle of continuity)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전자는 국제법상 국가관계는 고도의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선행국(predecessor State)으로부터 승계국(successor State)으로 국제법상의 지위, 특히 조약 관계는 승계되지 않고, 승계국은 백지상태에서 다시 국제관계를 개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후자는 국내법상 상속처럼 국제법상 선행국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국으로 이전된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두 원칙적 입장이 원형 그대로 국가실행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어느 한 원칙에 기반하여 승계 내용을 어떻게 변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 2. 개별적 해결방법

#### (1) 승계(이양)협정(devolution agreement)

1978년 조약 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이하, '1978년 협약') 제8조 제1항은 “국가승계일 당시 한 영토와 관련하여 유효한 조약상의 선행국의 권리 또는 의무들은 선행국과 승계국이 그러한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국으로 이전된다고 하는 협

2)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호, “조약의 국가승계와 국가관행”, *국제법학회논총*, 제48권 제3호, 2003, pp. 146-148 참조.

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약의 다른 당사국들에 대한 승계국의 권리 또는 의무로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승계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조약의 승계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승계협정을 통한 조약 승계문제 해결은 주로 탈식민지화(decolonization) 과정 중에 선행국인 식민 지배국과 신생독립국 간에 이루어진 해결 방식이었다.<sup>3)</sup> 승계협정을 통한 조약 승계문제 해결은 탈식민지 과정 중에 특히 영국이 주로 취한 태도로, 이후 여러 나라가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뉴질랜드도 서사모아와 관련하여 영국의 모델을 따라 승계협정을 체결하였다.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서 분리할 때도 이러한 예에 따라 승계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이탈리아와 소말리아,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프랑스와 라오스 및 베트남(포괄적 승계협정), 모로코(특정적 승계협정) 등도 승계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다. 다만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자국 식민지 독립 시 승계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다.<sup>4)</sup>

승계협정이 선행국의 조약이 승계국으로 승계됨에 있어서 어떠한 효력을 갖는가? 우선 승계협정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4조 내지 제36조가 적용되는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은 아니다. 이러한 승계협정은 식민 지배국이 식민지에서 철수할 때 독립하는 식민지 정부와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민 지배국과 승계대상 조약을 체결한 원 조약의 당사국은 승계협정의 입장에서 보면 제3국이 된다. 따라서 조약법의 기본원칙 상 이 제3국은 스스로 명시적 선언이나 행동으로 승계협정에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승계협정에 구속되지 않는다.<sup>5)</sup> 원칙적으로 승계협정으로 승계되는 선행국의 제3국에 대한 조약상의 권리 의무가 승계국으로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승계협정을 체결하는 선행국과 승계국간의 관계만을 규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sup>6)</sup>

3) Draft Articles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with commentarie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74, vol. II, Part One, (이하, Yearbook), p. 182.

4) Yearbook, p. 183.

5) I.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5<sup>th</sup> ed, OUP, 1998, p.651.

6) Yearbook, p. 184.

승계협정은 선행국이 체결한 조약을 승계국이 계속 이어가겠다는 승계국의 의지(willingness)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국가들의 실행이다.<sup>7)</sup> 승계국이 승계협정을 통하여 선행국이 체결한 조약을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3국과의 관계에서는 제3자간의 행위(res inter alios acta)로 선행국과 조약을 체결하였던 제3국에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않는다.<sup>8)</sup>

## (2) 일방적 승계 선언과 묵인의 결합

‘1978년 협약’ 제9조 제1항은 “국가승계일 당시 영토에 대해 유효한 조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들은 승계국이 그 영토에 관한 조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을 하였다든 사실만으로 승계국 또는 그 조약의 다른 당사국의 권리 또는 의무로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계협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승계국의 일방적 의사 표시만으로 상대방이 있는 조약의 승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후술하는 탕가니카(Tanganyika)의 Nyerere 수상이 UN 사무총장에게 행한 일방적 선언에 의한 조약 승계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Nyerere 방식을 1966년 보츠와나, 1967년 레소토, 1968년 나우루, 1963년 우간다 등이 답습하였다. 통가도 다소 다른 내용이지만 조약의 승계와 관련한 일방적 선언을 하였다. <sup>9)</sup>

또한 1965년 잠비아(Zambia)가 일방적으로 행한 조약 승계 선언도 일방적 방식의 한 예이다. 이러한 잠비아 방식은 가이아나, 바베이도스, 모리셔스, 바하마, 피지 등이 답습하였다.<sup>10)</sup>

르완다, 부룬디(탕가니카 방식에 유사) 등도 일방적 선언으로 조약 승계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sup>11)</sup> 일방적 선언에 의한 승계 해결은 승계협정에 의한 해결과는 달리 이해관계국에 직접적 의사를 전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7) Yearbook, p. 184.

8) Yearbook, p. 186.

9) Yearbook, pp. 188-189.

10) Yearbook, p. 190.

11) Yearbook, p. 191.

다는데 있다.

### 1) Nyerere 방식

Nyerere 방식은 조약승계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조약의 효력이 소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1961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탕가니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던 시점에 영국 정부가 탕가니카 정부에게 통상적으로 영국이 취하던 방식인 승계협정 체결을 통하여 조약의 승계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자, 당시 탕가니카 수상 Nyerere는 승계협정은 탕가니카가 해당 조약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도 승계시켜 탕가니카를 구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계협정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으로 탕가니카가 해당 조약을 탕가니카에 대하여 제3국이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영국과의 승계협정 체결을 거부하였다.

대신에 탕가니카는 1961년 12월 UN 사무총장에게 명시적으로 여타의 UN 회원국에 회람을 요청하면서 조약의 승계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일방적 선언을 보냈다.<sup>12)</sup>

---

12) Yearbook, p. 188.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Government of Tanganyika is mindful of the desirability of maintaining, to the fullest extent compatible with the emergence into full independence of the State of Tanganyika, legal continuity between Tanganyika and the several States with which, through the action of the United Kingdom, the territory of Tanganyika was prior to independence in treaty relations. Accordingly, the Government of Tanganyika takes the present opportunity of making the following declaration: As regards bilateral treaties validly concluded by the United Kingdom on behalf of the territory of Tanganyika or validly applied or extended by the former to the territory of the latter, the Government of Tanganyika is willing to continue to apply within its territory, on a basis of reciprocity, the terms of all such treatments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of independence (i.e., until 8 December 1963) unless abrogated or modified earlier by mutual consent. At the expiry of that period, the Government of Tanganyika will regard such of these treaties which could not by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e regarded as otherwise surviving, as having terminated. It is the earnest hope of the Government of Tanganyika that during the aforementioned period of two years, the normal processes of diplomatic negotiations will enable it to reach satisfactory accord with the States concerned upon the possibility of the continuance or modification of such treaties. The Government of Tanganyika is conscious that the above declaration applicable to bilateral treaties cannot with equal facility be applied to multilateral treaties. As regards these, therefore, the Government of Tanganyika proposes to review each of them individually and to indicate to the depositary in each case what steps it wishes to take in relation to each such instrument—whether by way of confirmation or termination, confirmation of succession or accession. During such interim period of review any party to a multilateral treaty which has prior to independence

“탕가니카 정부는 영국의 행위로 독립 전 탕가니카가 맺고 있던 조약 관계와 관련하여,

.....

영국이 탕가니카 영역에 대하여 유효하게 체결하였거나, 영국이 탕가니카에 유효하게 적용하였거나 확장한 양자조약과 관련하여서, 탕가니카 정부는, 상호 합의로 무효화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독립일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즉, 1963년 12월 8일까지)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그 영역에서 계속 적용하고자 한다. 그 기간의 종료 이후에는 관습국제법 규칙의 적용으로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한 그 조약은 종료한 것으로 탕가니카 정부는 간주한다.

.....

다자조약의 경우에는, 탕가니카 정부는 개별적으로 그것들을 심사하여, 기탁처에 각각의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를 알려줄 것을 제안하기로 한다.....”

이에 영국도 UN 사무총장에게 회원국들에게 회람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영국의 조약상의 의무가 탕가니카 영역에서는 배제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였다.<sup>13)</sup>

## 2) 잠비아 방식

잠비아 방식은 명시적인 효력 소멸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 한 조약이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1965년 잠비아는 탕가니카와는 다른 형태로 조약 승계와 관련한 일방적 선언을 하고, 그것을 UN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였

---

been applied or extended to Tanganyika may, on a basis of reciprocity, rely as against Tanganyika on the terms of such treaty.” (밑줄은 필자 추가)

13) Yearbook, p. 188. 원문은 다음과 같다. “..... Her Majesty's Government in the United Kingdom hereby declare that, upon Tanganyika becoming an independent Sovereign on 9th of December 1961, they ceased to have the obligations or rights, which they formerly had, as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of Tanganyika,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such international instruments to Tanganyika..”

다.<sup>14)</sup> 잠비아는 “... 심사를 완료한 이후에 관습국제법에 의하여 실효하는 조약과 잠비아가 소멸을 희망하는 조약을 적시하겠다고 제안한다. .... 잠비아 정부는 법적으로 승계되는 조약이나 그 조약의 시행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그것의 종료를 통지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 경우에도 영국은 탕가니카에서의 예처럼 잠비아 영역에서 영국의 조약상의 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신을 작성하여 UN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회원국에게 회람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 (3) 승계국의 참여를 규정한 조약

‘1978년 협약’ 제10조 제1항은 “조약이 국가승계 시 승계국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승계국은 조약의 해당 규정에 따라 또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조약에 대한 승계를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조약상에 국가승계 시 승계국이 조약의 한 당사자로 된다는 것이 규정된 경우, 이 규정은 승계국이 그렇게 취급될 것을 명시적으로 수락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

14) Yearbook, p. 190. 원문은 다음과 같다. “I have the honour to inform you that the Government of Zambia, conscious of the desirability of maintaining existing legal relationships, and conscious of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o honour its treaty commitments, acknowledges that many treaty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in respect of Northern Rhodesia were succeeded to by Zambia upon independence by virtu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ince, however, it is likely that in virtu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ertain treaties may have lapsed at the end of independence of Zambia, it seems essential that each treaty should be subjected to legal examination. It is proposed, after this examination has been completed, to indicate which, if any, of the treaties which may have lapsed b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Government of Zambia wishes to treat as having lapsed. The question of Zambia's succession to treaties is complicated by legal questions arising from the entrustment of external affairs powers to the former Federation of Rhodesia and Nyasaland. Until these questions have been resolved it will remain unclear to what extent Zambia remains affected by the treaties contracted by the former Federation. It is desired that it be presumed that each treaty has been legally succeeded to by Zambia and that action be based on this presumption until a decision is reached that it should be regarded as having lapsed. Should the Government of Zambia be of the opinion that it has legally succeeded to a treaty and wishes to terminate the operation of the treaty, it will in due course give notice of termination in the terms thereof. The Government of Zambia desires that this letter be circulated to all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ted Nations specialized agencies, so that they will be effected with notice of the Government's attitude.”(밑줄 필자 추가)



고 규정하고 있다. 승계 대상인 조약이 국가승계를 염두에 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의 조약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다자조약의 경우에 일부 존재한다. 1955년 의정서로 개정된 1947년 GATT 제XXVI조 제5C항은 종속자치영역(self-governing dependent territories)이 GATT 체약당사국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독립국가가 되는 경우 계속 당사국의 지위를 갖도록 의도하고 있다.<sup>15)</sup> 1960년 제2차 국제주석협정(International Tin Agreement), 1965년 제3차 국제주석협정, 1962년 국제커피협정(International Coffee Agreement), 1968년 국제설탕협정(International Sugar Agreement) 등에도 이러한 규정이 있다. 제2차 국제주석협정 제XXII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country or territory, the separate participation of which has been declared under Article III o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by any Contracting Government, shall, when it becomes an independent State, be deemed to be a Contracting Government and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Government of such State as if it were an original Contracting Government already participating in this Agreement. (밑줄 필자 추가)

이러한 조항을 가진 양자조약으로는 가이아나 독립 직전에 영국과 베네수엘라가 체결한 1966년 베네수엘라와 브리티시 가이아나 간 국경분쟁해결협정(Agreement to resolve the controversy over the frontier between Venezuela and British Guiana)이 있다. 가이아나는 독립 후 몇 주가 지난 뒤에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 조약의 독립된 제3의 당사국으로 참여하였다.<sup>16)</sup>

---

15) Yearbook, pp. 193-194.

16) Yearbook, p. 195.

### III. 조약 분야의 국가승계를 처리한 국가실행의 예

#### 1. 영역의 일부 승계 시 실행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르비아가 체결한 조약을 승계한 유고슬라비아의 예, 뉴펀들랜드(Newfoundland)가 캐나다의 영역에 편입된 이후에 캐나다가 체결한 조약이 그 지역에 적용된 예 및 1952년 에리트리아(Eritrea)가 에디오피아의 자치단위로 연합된 이후에 에디오피아의 조약이 에리트리아에도 적용된 예들이 이에 해당한다.<sup>17)</sup>

#### 2. 신생독립국가: 식민지 독립의 예

탕가니카, 잠비아의 예에 해당하는 아프리카의 많은 신생독립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인도, 파키스탄의 예도 같다. 또한 둘 이상의 영역으로부터 신생독립국가가 성립된 예도 있다. 이러한 예로는 식민지 라고스, 보호령 북 나이지리아, 보호령 남 나이지리아 및 영국신탁통치지역 카메룬이 통합하여 성립된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연방(Federation of Malaysia)이 성립한 경우 등이 있다. 참고로 말레이시아연방은 1957년 독립 시점에 제1단계로 말라카, 페낭 및 9개의 보호령으로 성립된 말라야연방(Federation of Malaya)으로 시작하여, 1963년 제2단계로 싱가포르, 사바, 사라왁이 연방에 가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sup>18)</sup>

#### 3. 국가 통합의 예

##### (1) UN 성립 이전의 예들

이와 관련한 역사적인 예는 1845년 독립국가이던 텍사스를 통합한 미국, 스위스, 1871년 German Federation, 1895년 Greater Republic of Central America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노르웨이와 스웨덴 연합국 및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연합국 등이 있다.<sup>19)</sup> 러시아,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Transcaucasian

17) Yearbook, pp. 208-209.

18) Yearbook, pp. 248-250.

Republics들이 소련으로 통합한 예도 있다. 참고로 소련은 1923년 러시아, 백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Transcaucasian Republics들이 체결한 조약들은 각각의 공화국 영역에서 여전히 효력을 가지며, 그러한 조약상의 의무 이행 책임을 소련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sup>20)</sup>

### (2) 탄자니아의 예

1964년 탕가니카(Republic of Tanganyika)와 잔지바르(People's Republic of Zanzibar)가 탄자니아(United Republic of Tanzania)라는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하면서 UN 사무총장에게 탄자니아는 UN의 단일 회원국이며 탕가니카와 잔지바르가 각각 체결한 조약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그것들의 체결 시 규정된 적용 영역에서 계속 효력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sup>21)</sup>

탕가니카와 잔지바르는 탄자니아라는 새로운 국가로 통합하면서 과거 그들이 각각 체결한 국제조약을 그들의 헌법적 입장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체결 시에 적용하기로 한 지역 범위 내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3) United Arab Republic의 예

1958년 이집트와 시리아는 양국을 통합하여 하나의 주권국가인 United Arab Republic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다자조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United Arab Republic의 외무장관은 UN 사무총장에게 United Arab Republic은 UN의 단일 회원국이며 이집트와 시리아가 체결한 국제조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전통문(communication)을 보냈다.<sup>22)</sup> 이 전통문은 시리

19) Yearbook, p. 254.

20) Yearbook, p. 254.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People's Commissariat for Foreign Affairs of the USSR is charged with the execution in the name of the Union of all its international relations, including the execution of all treaties and conventions entered into by the above-mentioned Republics with foreign States which shall remain in force in the territories of the respective Republics."

21) Yearbook, pp. 191 및 256. 원문은 다음과 같다. "...it is now a singl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and that all international treaties and agreements in force between the Republic of Tanganyika or the People's Republic of Zanzibar and other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ll, to the extent that their implementation is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al position established by the Articles of Union, remain in force within the regional limits prescribed on their conclus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밑줄 필자 추가)

아와 이집트 양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은 그 조약들이 체결된 시점에 규정된 적용지역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을 갖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 (4) 독일의 예

독일은 서독 기본법 제146조에 근거하여 통일헌법을 제정하여 통일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러한 통일 방법은 통일 독일이 새로운 법인격 즉 신국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 대신에 독일은 동독은 소멸하는 반면에 서독의 동일성과 계속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인 서독 기본법 제23조의 절차에 따라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달성하였다. 조약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서독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약경계이동의 원칙(조약경계가변의 원칙, principle of moving treaty frontiers)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였고, 동독의 경우에는 동독이 서독에 완전히 흡수되었으므로 동독이 과거에 체결한 조약을 어떻게 승계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했다.

독일 통일조약 제IV장 국제조약 및 협정 편 제11조는 서독의 조약이라는 표제 하에서 “국제기관 및 국제기구 회원가입을 규정한 조약을 포함한 서독의 국제조약 및 협정 사항들은 계속 유효하며, 부록 I에 언급된 예외조약을 제외하고는 그 권리와 의무사항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도 적용된다. 개별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 독일정부가 해당 조약 상대자와 협의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부 특수한 조약을 제외하고는 조약경계이동의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어서 제12조는 동독의 조약이라는 표제 하에 “(1) 통독 과정이 진행 중인 현재 동독의 구 제 조약들은 조약 체결 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쳐서 계속 유효, 조정 또는 효력 상실 여부 등을 결정 또는 확인하기로 한다. 이 작업은 다만 신뢰보호, 관련국들의 이익, 서독 측의 조약상 의무의 관점에서 그리고 자유,

22) Yearbook, p. 255. 원문은 다음과 같다. “It is to be not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Republic declares that the Union is a singl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and that all international treaties and agreements concluded by Egypt or Syria with other countries will remain valid within the regional limits prescribed on their conclus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민주, 법치국가적 기본원칙에 따라, 또한 EC의 권한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2) 통일 독일은 동독 측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에 대한 입장을 조약 당사자들 및 EC 측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서독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동독만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조약에 통일 독일이 가입하려고 할 경우에 독일은 모든 당사국과 EC의 권한이 관련되는 경우 EC와 협의한 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통일조약은 동독이 체결한 양자 조약과 다자조약을 구별하여 승계와 관련한 입장을 정하고 있다. 기본원칙은 통일 과정 중에 여전히 당사국으로 존재하는 동독이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동독이 체결한 조약을 통일 독일이 어느 범위에서 승계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통일조약은 동독 체결 조약의 승계와 관련하여 EC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유럽공동체(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공동체법상 회원국의 권한을 유럽공동체에 이양한 부분이 있으므로 만약 동독이 체결한 양자조약이나 동독만 당사국인 다자조약의 내용이 EC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게 되면 그러한 조약은 통일 독일이 승계할 수 없음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sup>23)</sup>

#### (5) 예멘의 예

1990년 예멘은 남 북 두 개의 국가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조약을 체결하여 통일을 달성하였다. 통일 예멘은 선행국들이 체결한 조약을 모두 승계하여 선행국 중 어느 일방에 최초로 적용된 시점부터 당사국이 되겠다고 선언하였다.<sup>24)</sup>

### 4. 국가 분리의 예

#### (1) 분리 이후 선행국이 존속하는 경우: 대부분 분리 독립

UN 성립 이전에 식민지는 식민 지배국의 완전한 영역으로 받아들여졌다.

23) P. Malanczuk,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sup>th</sup> revised ed., Routledge, 1997, p. 168.

24) *Ibid.*, p. 168.

이 경우 식민 지배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승계는 백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영국이나 스페인 식민지로부터 분리 독립한 식민지가 그러한 예이다. 이 경우 분리 독립한 신국은 모국인 식민 지배국이 체결한 조약상의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상태로 국제사회에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sup>25)</sup>

1963년 싱가포르를 말레이시아 연방으로 국가통합이 되었지만, 1965년 다시 분리하는 협약을 말레이시아와 체결하여 독립국가가 된다. 국가 분리와 관련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의 협약은 싱가포르가 독립하는 시점에 말레이시아와 타방 국가 간에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 싱가포르에게도 적용되던 조약은 싱가포르와 관련 타방국가(들) 간의 조약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6)</sup>

발틱 3국은 구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리투아니아 1990년 3월 11일; 에스토니아 1991년 8월 20일; 라트비아 1991년 8월 21일), 소련이 체결한 조약의 승계를 거부하였으며, UN에 회원국으로 신규 가입하였다.<sup>27)</sup> 실제 발틱 3국은 소련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이나 신생독립이 아니라 소련에 병합되기 이전, 즉 1940년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복귀이론에 입각하는 경우, 소련이 체결한 조약을 승계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sup>28)</sup>

2008년 2월 17일 구 유고슬라비아(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로부터 코소보가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하였다.<sup>29)</sup> 코소보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UN을 통하여 코소보 사태에 개입하여 코소보에는 UNMIK(United Nations Interim Administration Mission in Kosovo)가 설치되어 코소보의 행정 등을 처리하였다. 이에 코소보 독립 후 UNMIK가 체결한 조약 및 과거 SFRY가 체결한 조약을 어느 범위에서 코소보

25) Yearbook, p. 263.

26) Yearbook, p. 264.

27) P. Malanczuk, *supra* note 23, pp. 165-166.

28) 이근관, “국가승계법 분야의 새로운 경향과 발전”,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제2호, 1999, pp. 211-213 참조.

29) 독립선언의 내용 및 법적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줄고,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 선언의 국제법상 허용 가능성에 관한 ICJ 권고적 의견에 대한 검토”, *중앙법학*, 제12집 제4호, 2010, pp. 243-272 참조.

가 승계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코소보는 국제사회에서 다자적 관계를 거의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로 양자조약이 문제되었다. 코소보 외무성은 코소보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이나 연락사무소 및 코소보를 승인한 국가 중 이러한 기관을 코소보에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국가에게 해당 국가와 코소보 간의 관련 조약의 목록과 내용을 제출하여 줄 것을 구두통첩(Note Verbal)의 형태로 요청하였다.<sup>30)</sup> 2013년 현재,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콜롬비아, 체코,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나마, 페루, 스위스, 영국, 아랍 에미리트 및 미국 등이 답신을 보냈으며<sup>31)</sup>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핀란드, 독일, 및 영국과 조약 승계와 관련한 협정을 체결하였다.<sup>32)</sup> 이러한 승계협정에서 코소보는 새로운 국제조약관계를 형성하는 것과는 별도로 코소보가 속하였던 SFRY를 포함한 선행국 및 UNMIK 통치하에 체결된 조약들로부터 파생되는 국제의무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sup>33)</sup>

뿐만 아니라 코소보는 자신의 독립선언문에 자신의 국제법상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서도 언급하고 있다.<sup>34)</sup> 독립선언문 제9문단은<sup>35)</sup> 민주적으로 선출된 코소보 인민 대표는 UNMIK가 체결한 조약 등 코소보의 국제의무를 받아들인다고 약속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동시에 제12문단은<sup>36)</sup> 제9문단에서 이루어

30) Q. Qerimi & S. Krasniqi, "Theories and Practice of Succession to Bilateral Treaties: The Recent Experience of Kosovo", 14 *German L.J.* 1639, 2013, p. 1639.

31) *Ibid.*, 각주 1 참조.

32) *Ibid.*, p. 1640.

33) *Ibid.*, p. 1645.

34) *Ibid.*, p. 1647.

35) 제9문단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U]ndertake[n]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Kosovo, including those concluded on our behalf by the United Nations Interim Administration in Kosovo (UNMIK) and treaty and other obligations of the former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to which we are bound as a former constituent part, including the Vienna Conventions on diplomatic and consular relations.

36) 제12문단은 다음과 같다. "We hereby affirm, clearly, specifically, and irrevocably, that Kosovo shall be legally bound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is Declaration, including, especially, the obligations for it under the Ahtisaari Plan. In all of these matters, we shall act consistent with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resolu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resolution 1244 (1999). We declare publicly that all states are entitled to rely upon this declaration, and appeal to them to extend to us their support and friendship."

진 약속을 강조하면서 독립선언문에 기재된 약속 특히 제9문단상의 약속에 구속받는다라는 뜻을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독립선언 내용을 통하여 조약 승계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코소보의 의지라고 이해되며, 이는 조약 승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국제법 규칙 혹은 원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코소보의 일방적 선언과 그에 대한 타 당사국의 묵인 혹은 승인에 의하여 조약의 승계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분리 이후 선행국이 소멸하는 경우

뉴 그라나다(New Granada), 베네수엘라(Venezuela), 키토(Quito(Ecuador))로 구성된 대 콜롬비아(Great Colombia)가 1824년 미국, 1825년 영국과 우호 통상 항해조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 대 콜롬비아가 분리됨에 따라 동 조약의 승계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분리 이후 미국은 뉴 그라나다와 동 조약이 계속 유효함을 인정하였고, 영국은 베네수엘라 및 에콰도르와 동 조약이 유효함을 인정하였다.<sup>37)</sup>

1905년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분리도 오래된 선례 중 하나이다. 두 국가가 연맹국(union)으로 존재하고 있던 중에도 양국은 별도의 국제법 인격을 가지고 있는 실체로 인정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은 노르웨이 정부 및 스웨덴 정부와 각각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및 스웨덴 왕은 연맹국 전체에 적용되는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연맹국이 분리함에 있어서 양국은 연맹국이 체결한 조약을 분리 이후에도 계속해서 적용할 것임을 타국가에 통지하기도 하였다.<sup>38)</sup>

이집트와 시리아가 통합하여 수립되었던 United Arab Republic은 성립 후 2년이 지나 시리아가 통합으로부터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다시 이집트와 시리아로 분리되어 소멸한다. 이집트와 시리아로 분리된 이후 이들은 United Arab Republic이 체결한 양자 및 다자조약과 이들이 통합하기 전에 그들이 각

37) Yearbook, p. 260.

38) Yearbook, p. 260.



각 체결한 조약은 분리 이후에 그들 각각 영역에서 효력을 갖는다고 인정하였다.<sup>39)</sup>

1991년 알마 아타 선언(Alma Ata Declaration)에 근거하여 소련은 소멸하고 11개의 공화국으로 구성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 설립되었다. 독립국가연합에 속하는 공화국들은 자신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구소련이 체결한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장하고, 러시아가 UN에서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포함한 구소련의 회원국 지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sup>40)</sup>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1991년 6월25일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하였고 (실제 독립선언의 이행은 1991년 10월 8일에 이루어짐), 세르비아와 몬테니그로가 구유고슬라비아(SFRY)를 승계하는 유고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을 설립한다고 1992년 4월 27일에 선언하였으며, 마케도니아가 1992년 5월 1일 유럽연합(EU)에 의하여 독립국가로 승인되었다. 이러한 유고슬라비아 분열로 인하여 등장한 국가들은 UN 회원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입장을 달리하였다.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는 UN에 새로운 회원국으로 1992년 5월 22일에 가입하였다. 세르비아와 몬테니그로에 의하여 설립된 FRY는 SFRY를 승계한다고 주장하면서 SFRY의 UN 회원 자격의 계속을 주장하였으나,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러한 FRY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UN에 새로 가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들의 구 유고슬라비아의 조약 승계와 관련한 태도도 일치하지 않는다.<sup>41)</sup>

1993년 1월 1일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열하여 두 개의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분리된 두 국가는 '1978년 협약'의 내용에 따라 선행국의 국제조약을 대부분 승계하였다.<sup>42)</sup>

39) Yearbook, p. 262.

40) P. Malanczuk, *supra* note 23, p. 166.

41) *Ibid.*, p. 167.

42) *Ibid.*

## IV. 1978년 조약의 승계에 관한 협약 상의 내용

### 1. 협약 상 국가승계의 의미 및 국가승계 유형

‘1978년 협약’은 아직 발효하지는 않았지만, 조약 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관습국제법 혹은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 내용의 일단을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동 협약 제3조 제1항 (b)호는 ““국가승계”라 함은 영토의 국제적 관계와 관련한 책임이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이전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승계 시에 조약의 승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1978년 협약’은 승계 유형을 1) 영토 일부의 승계(succession in respect of part of territory) 2) 신생독립국(newly independent States) 3) 국가의 통합 및 분리(uniting and separation of States)로 구분하여 각각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규율의 내용 중 일부는 관습국제법의 내용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관습국제법 혹은 국가실행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새로운 규범적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 2. 국가승계 유형별 조약 승계의 내용

#### (1) 영토의 일부 승계의 경우

한 국가의 영역이었던 부분을 승계하여 영역이 확장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한 국가 영역 전부가 다른 국가에 전부 흡수된 경우는 국가통합에 해당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한 국가 영역의 일부를 군사적으로 점령하여 영역이 확장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sup>43)</sup>

‘1978년 협약’ 제14조는 이 경우 조약경계이동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영역을 상실한 선행국이 체결한 조약은 자동적으로 해당 영역에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승계국의 조약은, 그 조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혹은 당해 조약의 운용 조건을 급격하게 변경하는

43) Yearbook, pp. 208-209.

경우가 아니라면, 확장된 영역에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 (2) 신생독립국(Newly Independent States)의 경우

‘1978년 협약’ 제2조 제1항 (f)는 신생독립국을 “... 그 영토가 국가승계일 직전에 선행국이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영토에 속해 있었던 국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식민지, 신탁통치, 위임통치, 보호국 체제와 같은 종속관계 하에 있던 영토가 독립을 획득하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기존의 국가로부터 분리하여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거나 두 개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sup>44)</sup>

신생독립국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백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약 승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1978년 협약’ 제15조는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의 내용은 핀란드, 파키스탄 등의 독립 시 해결 방법과 일치한다. 즉 핀란드가 러시아로부터 독립할 때 영국은 자국과 핀란드 사이에는 어떠한 조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백지의 원칙에 입각한 태도를 표명하였다.<sup>45)</sup> 1947년 파키스탄 독립 시 UN현장의 효력과 관련한 UN 사무국의 태도도 백지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어서 파키스탄은 신국으로 UN 회원국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보았다. 결국 파키스탄은 새로운 가입 절차를 거쳐 회원국이 되어야 했다.<sup>46)</sup>

신생독립국가의 경우 조약 승계는 원칙적으로 백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1978년 협약’은 신생독립국가들이 입법조약 등 다자조약에의 가입권을 갖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행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을 승계하는 방식과 당사자 간의 특수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양자조약을 승계하는 방식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에 의하면, 신생독립국가는, 신생독립국가의 조약 승계가 조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거나 승계로 인하여 조약 운용 조건에 급격한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면에 의한 승계통고로 선행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약의 문언이나

44) Yearbook, p. 176.

45) Yearbook, p. 211.

46) Yearbook, p. 211.

조약 가입국의 제한된 수 및 조약의 목적을 고려할 때 타 국가의 참가를 위해서는 기존 가입국의 동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신생독립국가는 기존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서 조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자조약의 경우에는 신생독립국가와 선행국이 체결한 양자조약의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혹은 행위를 통하여 그러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신생독립국가는 그러한 양자조약을 승계한다고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다. 양자조약의 승계를 다자조약의 경우와 달리 규정한 이유는 다자조약과는 달리 양자조약의 경우는 조약의 당사국이 누구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신생독립국가가 승계국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생독립국가의 선행국은 잔존하고 있어서 선행국과 양자조약의 제3당사국간의 조약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47)</sup> 제23조는 양자조약의 경우, 승계국이 양자조약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지 않고, 양자조약의 당사국의 의사에 승계 여부를 의존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승계국이 신생독립국가인 경우 양자조약은 승계국과 양자조약의 당사국인 국가의 의사가 동시에 중요하게 된다. 항공운송협정, 무역협정, 기술 혹은 경제지원협정은 양자조약 중 계속 승계를 인정하는 협정의 대표적 유형이다.<sup>48)</sup>

양자조약이든 다자조약이든 승계 문제가 확정될 때까지 신생독립국인 승계국은 승계국과 타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혹은 동의로 간주될 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해당 조약을 잠정적용(provisional application)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49)</sup> 또한 신생독립국가가 둘 이상의 영역으로부터 성립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앞의 신생독립국가의 조약 승계방식과 동일하게 승계된다.

### (3) 국가통합(Uniting of States) 의 경우

복수의 국가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경우로 통합된 국가가 중앙집권적

47) Yearbook, p. 237.

48) Yearbook, p. 238.

49) '1978년 협약' 제26조, 제27조 참조.

단일국가체제이든 연방국가체제이든 여타의 다른 국가체제이든 관계없다.<sup>50)</sup> 이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거나 조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거나, 조약의 운용 조건을 급격히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의 원칙이 적용되어 양자 조약이든 다자조약이든 관계없이 각각의 기존의 적용지역에 한하여서 계속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1978년 협약'은 규정하고 있다.<sup>51)</sup> 비록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는 국가통합에 있어서의 조약 승계 관련 규정이 통합 후 신국이 성립하는 경우이든, 통합하는 한 국가는 계속성을 유지하고 통합되는 타방국가는 완전히 소멸하는 흡수통합의 경우이든, 구별 없이 적용되는 규정을 의도한 상태에서 조문을 만들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기본 원칙은 복수의 국가가 통합하여 새로운 국가를 성립시키는 경우를 주로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sup>52)</sup>

그런데 국가실행에 있어서 국가들은 이 규정을 국가통합의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인 조약승계 방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통합과 관련한 '1978년 협약' 규정이 관습국제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거나 혹은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국가실행에 있어서 흡수통합 형식으로 국가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약경계이동의 원칙에 입각하여 승계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협약 채택과 관련한 비엔나회의에서 독일 대표가 주장한 국가통일의 경우에는 승계국과 제3국 간의 합의를 통하여 조약 승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더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53)</sup>

#### (4) 국가 분리(Separation of parts of a State)의 경우

기존 국가의 영역에서 일부가 분리하여 새로운 국가를 구성하는 경우, 즉 분리 독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국가는 존속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기존 국가마저 소멸하여 복수의 신국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50) Yearbook, p. 253.

51) '1978년 협약', 제31조 참조.

52) 정인섭, 前掲書 (각주 1), p. 343.

53) 上掲書, p. 343.

이 경우 ‘1978년 협약’은 선행국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행국 전역에 적용되던 조약은 각 승계국 모두에 적용되며, 선행국의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던 조약은 분리 이후 그 지역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적용이 조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거나, 조약의 운용 조건을 급격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한다.<sup>54)</sup> 하지만 이러한 규정도 국가통합과 관련한 규정에서 말한 바처럼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지 않아 관습국제법의 지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sup>55)</sup>

## V. 남북한 통일 유형에 따른 조약의 승계 문제

남북한의 통일로 인한 조약 승계 문제는 통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예를 들어, 남북한 간의 대등한 합의를 통하여 통일이 이루어지는지, 흡수통일의 형식이 되는지, 혹은 통일 과정 중에 무력 사용이 개입하는 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동시에 제3국의 태도에 따라라도 조약의 승계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sup>56)</sup> 또한 조약의 내용 및 성질에 따라 승계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추후로 미루고, 여기서는 통일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승계 문제에 대하여 주로 언급하기로 한다.

### 1. 국가통합의 결과 신국이 성립하는 경우

남북한이 국가통합을 통하여 신국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새로운 헌법의 제정 과정을 요청한다든지 등의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동시에 국제법상 조약의 승계와 관련하여서도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의 승계와 북한이 체결한 조약의 승계라는 이중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54) ‘1978년 협약’, 제34조 참조.

55) 정인섭, 前掲書 (각주 1), p. 344.

56) 上掲書, pp. 372-373.

## 2. 대한민국으로 국가통합이 되는 경우

북한이 소멸하면서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으로 흡수 통합(absorption, incorporation) 되는 통일 방식이 이에 해당할 것이며, 이는 독일의 통일방식과 동일한 방식이 된다. 이 경우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은 조약경계이동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 범위에 흡수된 북한 전역에도 적용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반면에 소멸하는 북한이 체결한 조약은 어느 범위 내에서 승계되어야 할 것인지가 주로 문제된다. 또한, 국가통합이라는 사정변경 혹은 조약의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중 조약경계이동의 원칙에 따른 확장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없을 것인지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독일의 경우도 통일 시 서독이 체결한 조약은 조약경계이동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독일 영역 전체에 계속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일부 조약의 경우에는 동독 지역에 적용하는 것을 배제한 바 있다.

## VI. 이상적인 통일 방식과 그에 따른 조약 승계 해결

### 1. 조약의 승계 방식과 범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가 평화적 과정을 거쳐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북한 체제가 소멸하는 형태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가장 바람직한 통일 형태라고 판단된다.<sup>57)</sup> 이러한 통일을 통한 국가승계의 모습은 형식적으로 ‘1978년 협약’ 상의 국가통합 개념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가통합을 우리 헌법적 시각에서 보아 우리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따라 우리의 규범적 지배력이 현실적으로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의 헌법 규정에 기초하면 통일은 우리 영토에

57) 정인섭 교수도 이러한 취지에서 북한 조약의 국가승계 문제를 다루고 있고(上揭書, p. 373.), 이는 독일 통일 방식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규범적으로도 확보한 것이므로 당연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동일성이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지지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한편 통일을 이러한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과의 관련성을 배제한채 보는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두 가지 유형의 국가통합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국가통합의 결과 대한민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아닌 제3의 신국이 성립하는 경우가 그 하나이며, 이 경우에는 앞서 본 바처럼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과 북한이 체결한 조약 모두의 승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면에 독일의 예처럼 북한이 대한민국에 흡수되어 대한민국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유지한 국제법적 지위에는 변경이 없고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은 원칙적으로 조약경계이동의 원칙에 따라 조약의 적용지역이 확대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고, 북한이 체결한 조약은 그것이 양자조약이든 다자조약이든 관계없이 어떠한 범위 내에서 승계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1) 우리가 체결한 조약 문제

대한민국이 계속 존속하는 형태인 흡수통일이 되는 경우, 우리가 체결한 조약은 조약경계이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 지역에 확장 적용되어도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 영토 조항의 내용이나 우리의 국내법이 북한 지역에도 적용된다는 우리 대법원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동시에 우리와 조약을 체결한 타방 당사국도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대한민국이 체결한 일부 양자조약은 북한 지역에 확장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한 미군 주둔 관련 조약<sup>58)</sup>이나 한일간의 청구권협정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조약은 승계시에 북한지역으로의 확장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일기본관계조약 제3조는 “대한민국 정부가 UN 총회 결의 제195(III)호에

58) 예를 들어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신용호, 前揭論文 (각주 2), p. 148.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총회 결의의 의미에 대하여 이견은 있으나, 한일 양국은 이 조항을 통하여 기본조약의 적용범위를 확정하려고 하였다. 반면에 한일 청구권협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지만, 청구권협정 체결과정이나 그 이후 북일 수교협상과정 중에 논의된 바를 보면 북한이 일본에 갖는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전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 후 북한과 관련한 청구권을 별도로 주장한다고 하여 일본이 거부의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sup>59)</sup> 또한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내용을 갖는 조약의 경우, 승계하지 않는다는 국가관행에 비추어 볼 때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의 적용 지역 확대는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은 독일 통일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관련한 내용 등을 동독 지역에 확대 적용하지 않은 실행과도<sup>60)</sup> 일치한다고 본다.

## (2) 북한이 체결한 조약 문제

우리와 체제를 달리하던 북한이 체결한 조약을 통일 한국이 자동으로 승계한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이념에 비추어서 바람직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이에 북한이 체결한 조약을 승계하는 방식 및 승계 범위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인 입장, 즉, 북한은 국가로 여겨지지도 않으며, 남북한 간의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성격지우는 입장에 따른 검토도 필요하겠으나 이는 그렇게 타당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조약의 승계 문제는 조약의 타방 당사국인 제3국이 관여된 문제이므로, 전적으로 우리의 국내적인 시각에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 외교부가 2017년 3월 현재 공표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와의 수교국이 190개국, 북한과의 수교국이 161개국, 동시 수교국이 158개국으로 나타나 있다. 주요국가 중 북한과 수교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미국, 프랑스, 일본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다.<sup>61)</sup>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에 비추어보면서 북한이 체결한 조약 승계 문제

59) 정인섭, 前掲書 (각주 1), p. 374.

60) 독일통일조약, 부록 I, 제1장 연방외교부장관 업무영역 제1절.

61) 남, 북한 수교국 정보 <http://www.mofa.go.kr/introduce/abroad/relations/index.jsp?mofat=001&menu>

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와 관련한 문제와 아울러 북한이 체결한 조약의 내용도 승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북한은 폐쇄국가로서 그들이 체결한 조약을 대외적으로 공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북한이 체결한 조약 승계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조약체결 상황과 체결된 조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조약의 승계 문제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UN에 등록된 조약을 공간하고 있는 UNTS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보면 현재까지 북한이 체결한 조약의 전체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대략 검색하면 북한이 체결한 조약은 110여개, 그 중 기탁처가 UN 사무총장인 다자조약은 50여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sup>62)</sup>

이하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북한의 조약 체결 상황 및 내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북한이 체결한 조약의 승계 문제를 일반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정인섭 교수는 국가통합의 형태로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경우 어떠한 형태의 통일이 되든 소멸되는 북한이 체결한 조약은 관습국제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 우리가 승계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1978년 협약’의 국가통합 시에 있어서의 조약승계규정도 국가실행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해결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이 경우 해결 방법은 승계국이 소멸국의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종료를 시키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승계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정인섭 교수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세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북한의 모든 조약은 원칙적으로 종료시켜야 한다. 독일의 경우 협의를 통하여 동독 조약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반드시 그렇게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승계에 있어서 관습국제법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약만 존중한다. 셋째, 관습국제법상 존중할 의무는 없으나 상대국의 신뢰를 보호할

=m\_70\_30\_20 (2017년 7월 11일 방문)

62) [https://treaties.un.org/Pages/AdvanceSearch.aspx?tab=UNTS&clang=\\_en](https://treaties.un.org/Pages/AdvanceSearch.aspx?tab=UNTS&clang=_en) (2017년 6월 19일 방문 검색) 상기 웹주소 Advanced Search에서 검색 가능. 2010년 한명섭은 2008년 백진현의 “한반도 통일시 남북한 체결조약의 승계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내용을 보완하여 북한이 체결한 양자조약과 다자조약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한명섭, “북한의 조약체결 현황 및 향후 처리 방안”, 제36차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 자료, 법무부, 2010. 9. 3.)

필요가 큰 경우이거나 통일 한국의 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조약은 개별적으로 검토한다.<sup>63)</sup> 이러한 정인섭 교수의 입장은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국가승계 시 조약의 승계 분야의 국제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타당성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 2. 국경조약의 특례

리비아 차드 간의 국경분쟁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국경조약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동 국경조약에 의하여 설정된 국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국경은 한번 합의되면 계속적으로 유효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시도는 국경의 안정성이라는 근본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sup>64)</sup> 이는 국경조약에 의하여 창설된 국경의 최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재판관이었던 아지볼라(Ajibola)도 국경조약은 평화, 안정 및 최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이러한 입장은 많은 다자조약들에 의하여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라고 밝히고 있다.<sup>65)</sup>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62조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조약의 종료 혹은 탈퇴사유로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조약이 경계선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근거하여 동 국경조약의 종료 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78년 협약’ 제11조는 국가관행으로 인정되어오던 국경선 신성의 원칙(principle of sanctity of frontiers), 즉 국경선은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조약에 의하여 설정된 경계는 국가승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승계에 있어서 국경조약에 따라 설정된 국경선의 승계는 식민지 독립의 과정 중에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일반적으로 존중되어 왔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단결기구는 1964년 “모든 회원국은 독립을 달성할 당시의 국경선을 존중할 것을 약

63) 정인섭, 前掲書 (각주 1), pp. 376-377.

64) Territorial Dispute (Libyan Arab Jamahiriya/Chad), Judgement, *I.C.J. Reports* 1994, paras. 72-73.

65) Territorial Dispute (Libyan Arab Jamahiriya/Chad), Judgement, *I.C.J. Reports* 1994, p. 6, Separate Opinion of Judge Ajibola, para. 53.

속한다.”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sup>66)</sup> 선행국이 체결한 국경조약은 승계국으로 승계된다는 원칙은 국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국가승계에 관한 관습국제법 즉,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해당한다.<sup>67)</sup> 같은 맥락에서 부르키나 파소와 말리 간의 영토 분쟁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승계에 있어서 기존의 국제경계존중의무는 국제법의 일반 규칙(*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law*)에서 파생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sup>68)</sup>

이러한 점은 통일시 특히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국경조약과 관련하여 반영되어야 할 점이다.<sup>69)</sup> 북한은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조·중 국경조약<sup>70)</sup>과 조·중 정부대표단간의 조·중 국경문제합의서를, 1964년 3월 20일에는 북경에서 조·중 국경의정서를 체결하였다.<sup>71)</sup> 이러한 협정에 따라 북한과 중국은 압록강-백두산 천지-홍두수-두만강으로 국경을 정하고 있다.<sup>72)</sup> 조·중 국경조약은 이 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모든 양국 간의 국경에 관한 문건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간도협약이나 백두산 정계비 모두를 더 이상 효력이 없는 문건으로 만들어버린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sup>73)</sup>

남북한 통일로 제3의 신국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1978년 협약’ 제31조 국가통합의 경우에 적용되는 계속의 원칙의 적용과 기존 경계 존중주의에 비추어

66) 김대순, *국제법론*, 제13판, 삼영사, 2008, p. 870.

67) 신용호, 前揭論文(각주 2), pp. 145-169, p. 152; P. Malanczuk, *supra* note 23, pp. 162-163; A. Cassese, *International Law*,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78; M.N. Shaw, *International Law*, 4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p. 683-686.

68) Frontier Dispute, Judgment, *I.C.J. Reports* 1986, p. 554, para. 24.

69) 이에 대하여서는, 줄고, “間島 歸屬과 관련한 몇 가지 국제법적 문제에 대한 管見” *중앙법학* 제10집 제2호, 2008, pp. 391-393 참조.

70) 중국은 이웃 12개국과 국경조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조선과는 1962년에 국경조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邵津 主編, *國際法*, 北京大學出版社, 2000, p. 113)

71) 중국과 북한 양 당사자는 동 조약들을 UN 사무국에 등록하지 않고 그 체결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다.(이현조, “조중국경조약체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3호, 2007, pp. 177-202, p. 178.)

72) 이러한 국경선은 간도협약이 석을수를 그 한계로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북쪽으로 국경선을 상향시켜 일부 영토를 더 획득한 측면이 있는 한편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모두 상실하였다는 측면도 있다.

73) 이현조, 前揭論文(각주 71), p. 183. 물론 북한이 백두산 정계비에 정하여진 사항이나 간도협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 즉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를 적법하게 승계한 당사자인지와 관련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러한 문제까지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지는 않기로 한다.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74)</sup> 다른 한편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합(absorption, incorporation)하여 북한은 소멸하고 한국은 계속 존속하는 경우는 앞서 말한 바처럼 독일 사례와 유사하다. 독일은 독일 통일조약이 확인하는 바처럼 기존 국경을 존중하는 입장에 입각하여 이 문제를 처리하였다.<sup>75)</sup> 우리의 경우, 통일조약을 체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을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통일조약의 내용에 대하여 제3자인 중국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결국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은 관련국인 중국과의 국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sup>76)</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은 어떠한 형태의 통일이 되든지 관계없이 통일한국이 승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국가관행이나 국경조약의 승계와 관련한 국제법 원칙에도 부합한다.<sup>77)</sup>

## VII. 결론

남북한의 통일은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국가통합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하여 북한은 소멸하되 대한민국은 계속 유지되는 형태가 되든(독일식 흡수통일),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합하여 새로운 국가를 구성하든(국가통합 후 신국 성립) 그것이 국가통합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독일식 흡수통일에 있어서의 양 당사자가 체결한 조약의 승계 문제 해결 방식이나 국가통합 후 신국 성립에 있어서 조약 승계 문제 해결 방식은 전자의 경우에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의 경우 조약계정이동의 원칙과 북한이 체결한 조약의 승계 문제

74) 上揭論文, p. 194.

75) 독일 통일과정에 있어서 영토적 성격의 조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이근관, 前揭論文(각주 28), p. 201.)

76) 이현조, 前揭論文(각주 71), p. 197.

77) 정인섭 교수는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며, 독일 통일의 사례나 예멘 통일의 사례도 이와 다른 결론에 이를 시사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서술한다.(정인섭, 前揭書(각주 1), pp. 378-379.)

가 발생한다는 점, 후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체결한 조약 각각의 승계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론적인 차이가 있지만, 조약경계이동의 원칙도 사정변경의 원칙 등에 입각하여 일부 수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 국가통합에 있어서 조약의 승계의 경우 계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에 있어서 어떠한 유형의 국가통합이 되더라도 조약의 승계 문제는 유사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제어** 남북통일, 조약 승계, 니에레레 방식, 잠비아 방식, 국가통합

Korean Unification, Succession of Treaties, Nyerere method, Zambia method, Uniting of States

◆ 참고문헌 ◆

- Brownlie I.,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5<sup>th</sup> ed, OUP, 1998.
- Cassese A., *International Law*,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Draft Articles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with commentarie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74, vol. II, Part One
- Malanczuk P.,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sup>th</sup> revised ed., Routledge, 1997.
- Qerimi Q. & S. Krasniqi, “Theories and Practice of Succession to Bilateral Treaties: The Recent Experience of Kosovo”, 14 *German L.J.* 1639, 2013.
- Shaw M.N., *International Law*, 4<sup>th</sup>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邵津 主編, *國際法*, 北京大學出版社, 2000.
- 졸고, “間島 歸屬과 관련한 몇 가지 국제법적 문제에 대한 管見” *중앙법학*, 제10집 제2호, 2008.
- 졸고,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 선언의 국제법상 허용 가능성에 관한 ICJ 권고적 의견에 대한 검토”, *중앙법학*, 제12집 제4호, 2010.
- 김대순, *국제법론*, 제13판, 삼영사, 2008.
- 신용호, “조약의 국가승계와 국가관행”, *국제법학회논총*, 제48권 제3호, 2003.
- 이근관, “국가승계법 분야의 새로운 경향과 발전”,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제2호, 1999.
- 이현조, “조중국경조약체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3호, 2007.
- 정인섭, *조약법강의*, 박영사, 2016.
- 한명섭, “북한의 조약체결 현황 및 향후 처리 방안”, 제36차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 자료, 법무부, 2010. 9. 3.
- Frontier Dispute, Judgment, *I.C.J. Reports* 1986.
- Territorial Dispute (Libyan Arab Jamahiriya/Chad), Judgment, *I.C.J. Reports* 1994, p. 6.
- Territorial Dispute (Libyan Arab Jamahiriya/Chad), Judgment, *I.C.J. Reports* 1994, p. 6, Separate Opinion of Judge Ajibola.

[Abstract]

## The International Legal Issues of Treaty Succession in case of Korean Unification

Yi, Seong-Deog

In case of the Korean Unification, we may encounter many international legal issues. This paper reviews one of the significant international legal issues, the succession of treaties concluded by ROK and DPRK (North Korea) by the Unified Korea. The issue of succession of treaties in international law is very problematic, although in 1978 the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1978 Convention) was adopted under the auspices of the UN. Even before the Convention was adopted, States have shown different positions regarding the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Many African newly independent States took an unilateral stance regarding succession of treaties concluded by the colonial powers. The typical examples are the Tanganyika and Zambia cases. And also, eve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1978 Convention, the States do not give full support to the Convention. Thus, it is not easy to give definite answer to the issue of succession of treaties in case of the Korean Unification. In general, the types of State succession influence the result of succession of treaties. For example, the State succession may occur in cases of Newly Independent States, succession of part of a State territory, uniting of States and division of a States, in each case, the succession of treaties may differ. Thus, in case of Korean Unification, the scope of succession of treaties certainly depends on the type of Unification. If, after the Unification, a new State appears, then, the types of succession will be 'uniting of States'. In this case, the issue of succession of treaties concluded by ROK and DPRK may arise equally. However, if the Unification takes the form of



absorption or incorporation of DPRK into ROK, the issue of succession of treaties concluded by DPRK may arise. In this case, the German example may be a good guidance to Korean Unification. As for the treaties which were concluded by ROK may extended to the area which has been governed by DPRK based on the principle of moving treaty frontier. And as for the treaties which were concluded by DPRK, it would be the best way for DPRK to arrange them whether to succeed or not with the other parties before the Korean Unification is effected.

